

부평구문화재단 인권경영보고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 2024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I. 인권정책 선언·인권경영 체계

인권정책 선언	4
인권경영 체계	5

II.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9
주요 인권이슈 보고	15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21

III. 구제절차

구제절차 소개	25
구제절차 운영성과	27

IV. 인권경영 교육

인권경영 교육 체계 및 성과	29
-----------------	----

V. 종합적 평가·공개 및 소통

인권경영 종합진단	31
인권경영 성과평가	33
인권경영 보고방식	35

APPENDIX

UN이행지침 인권보고 프레임워크	37
인권경영 보고 지침	38
외부 전문가 유효성 검증 의견	39

I. 인권정책 선언 · 인권경영 체계

1. 인권정책 선언	4
2. 인권경영 체계	5

1. 인권정책 선언

인권정책선언 내용 | 제정 과정 | 확산 노력

인권경영 선언·체계

인권정책 선언

인권경영 체계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의 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

인권경영선언 주요내용

제정	분야별 내용 마련, 부서별 의견 수렴, 인권경영선언('21)
목표	재단이 추구하는 인권경영이념을 담은 항목 실천
구성	세계인권헌장, ILO핵심협약, UNGC 10대원칙 등 규범 주요사항 반영
내용	세계인권선언 존중 및 지지 비차별,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및 상생발전 노력 개인정보보호 반부패 및 투명경영 실천 예술가 등 사업파트너 공정 대우 및 권리보장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보장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노력
참여	임직원 인권의식 조사, 부서별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홍보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21) ·인권경영선언문 작업장(사무실 등) 입구 게시('21) ·홈페이지 인권경영 페이지 마련 및 선언문 게시('21)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인권경영책임관 지정('21)

인권경영선언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의 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내와 기준과 규범을 준수한다.
- **우리는** 인권, 문화다양성, 노동, 환경, 빈부격 등의 가치를 지킨다.
- **우리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국적,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임직원 교육에서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지하며,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및 참여의 권리의 실현과 보호 의무를 다한다.
- **우리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
- **우리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지역의 문화예술가치 발굴과 주민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인권경영 선언·체계

인권정책 선언

인권경영 체계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운영지침

- ❖ 목적 : 임직원 · 협력기관 · 지역사회 · 이용객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 구성 : 7장 32조(제정 : 2022.11.30)
- ❖ 범위 : 노동자 | 안전 및 보건 | 공급망 | 현지주민 | 고객 | 환경

인권경영 운영지침 주요내용

- ✓ 인권경영 헌장(제16조) :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를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
- ✓ 인권교육(제20조) : 임직원 대상 연1회 이상 실시, 사이버·집합 교육 등 적절한 방법
- ✓ 인권영향평가(제29조) :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실시
- ✓ 인권침해구제 절차(제31조) :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이용 가능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인권경영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평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임직원”이란 근무 형태 및 직급·직종을 막론한 재단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정부, 협력기관(단체), 지역주민, 고객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인권영향평가”란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재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 사람을 유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총칙

인권경영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인권경영 일반원칙

인권경영의 기본원칙,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 및 보건, 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보호 등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교육, 인권이행 활동 지원 등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회의, 의견청취, 이해충돌 기피, 비밀엄수 등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구제 절차

2.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 책임자 I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선언·체계

인권정책 선언

인권경영 체계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책임

- ❖ 인권경영 책임자 : 이사장
-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 대표이사
- ❖ 인권경영 책임관 : 기획경영본부장

인권경영 심의

내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역할/ 소집 및 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등

목적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한 독립 의사결정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인권경영 개선 필요사항 권고, 인권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활동, 심의 등
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 내부
구성	• 내부위원(3명) : 대표이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근로자 위원 • 외부위원(4명) : 인권단체 활동가, 노무사,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등

2.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 | 추진 전략

인권경영 선언·체계

인권정책 선언

인권경영 체계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전담부서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

인권경영 담당(2024년)

기획조정팀(032-500-2014)

인권경영 추진 전략

01. 체계강화



✓ 비전(Vision)

인권경영 이행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 (~'23) 인권경영 제도구축
- (~'25) 인권경영 내재화
- (~'27) 인권경영 문화확산

02. 전략추진



✓ 분야별 전략 마련을 통한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

- ✓ • 노동권 보장/고용상 비차별
- 인권경영 관련 교육 추진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 리스크 도출 및 개선
- 인권존중 문화확산

03. 모니터링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리스크 진단 및 취약요소 발굴 · 개선 이행

- ✓ 이해관계자 인권 실태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 활동

04. 문화확산



✓ 법정 의무 외 인권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 의식 제고 및 상호존중 내재화

- ✓ 주요 사업 파트너 의견수렴
및 인권-ESG 경영 홍보,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한 서약 운영 계획

II.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9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15
3.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21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실시계획

추진배경

-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적용 권고
- ❖ EU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환경·인권 관련 제도화 흐름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 부각
-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 경영진 및 구성원의 인권경영 추진의지

추진범위

-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계획·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수렴·기관 현황조사·관련부서 교육·현장점검 등
- ❖ 중대성 평가 : Step 1. 이슈파악 - Step 2. 이슈 우선순위 결정 - Step 3. 핵심이슈(과제) 도출 및 유효성 검증

추진기간 및 대상

추진기간	구분	대상	담당부서
24. 10. 01 ~ 24. 11. 2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체계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24. 10. 07 ~ 24. 11. 29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팀, 기획조정팀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실시계획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추진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따른 진단 실시



세부절차 및 주요내용

STEP 01 사업 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수행주체 구성
평가대상 선정
부서별 인권 담당자 선정
사업선정(주요사업)

STEP 02 교육 및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식별 영향도 고려

- ✓ 인권경영 소개
- ✓ 회사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식별
- ✓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정하기
- ✓ 부서별 의견수렴

STEP 03 주요 인권이슈 파악

부정적 인권영향· 실제적·잠재적 인권 이슈

- ✓ 국제표준 주요이슈 및 인권위 매뉴얼 적용
- ✓ 인권이슈 우선순위 정하기

STEP 04 체크리스트 작성·평가

체크리스트 제작 논의·평가

- ✓ 체크리스트 설계
- ✓ 지표별 근거마련
- ✓ 분야별 진단
- ✓ 핵심과제 도출
- ✓ 개선계획 수립

STEP 05 보고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개선

- ✓ 제3자 검증
- ✓ 결과보고 및 공개
- ✓ 개선조치 이행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직전년도 평가 점검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직전년도 인권경영 이슈

- 인권경영 체계 점검(인권경영 현장 및 이행지침 점검 · 인권침해 구제세척 및 구제절차 매뉴얼 마련 · 심의기구 운영 등)
-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인권경영 발전 전략 추진(법정의무 외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
- 인권경영 관리체계 등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기간	대상	주요 관련부서	비고
23. 09. 04 ~ 23. 10. 13	인권경영 추진체계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23. 09. 11 ~ 23. 10. 20	공연사업	예술기획팀, 시설관리팀, 무대기술팀, 기획조정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직전년도 주요이슈에 대한 개선성과

핵심이슈	주요대상	추진성과	기대효과
법정의무 외 인권경영 관련 교육 추가 실시	임직원	법정의무 외 인권경영 교육 실시 -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 - 인권경영의 이해 및 사례 교육	상호존중 내재화
인권경영 페이지 구축 및 정보공개	대내외 이해관계자	- 재단 공식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페이지 구축 - 인권경영보고서 등 정보 공개 - 인권침해 신고센터 신설	정보공개 및 구제제도 강화
사업파트너의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관리	공급망 (사업 파트너)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약제도 운영 -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서약 양식 마련 - 서약제도 운영 기반 조성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평가 팀 구성 | 이해관계자 참여

금차년도 평가 팀 구성

주관부서	대상	담당부서	진단평가	심의기구
기획조정팀	기관운영(인권경영체계)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한국인권경영연구소	인권경영위원회
	주요사업(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팀, 기획조정팀		

이해관계자 참여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담당부서 교육 및 이해관계자 식별, 부서별 주요이슈 점검 및 기관현황·잠재적 리스크 관련 의견수렴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진단 지표)를 통한 진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이슈 추가 반영

1 이해관계자 식별

- ✓ 관련부서 설명회 진행
- ✓ (기관운영)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주요사업) 예술교육팀, 기획조정팀
- ✓ 이해관계자 식별, 부정 이슈 파악
- ✓ 이해관계자 ↔ 기관/사업 '영향력' 고려

2 우선순위 정하기

- ✓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논의
- ✓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그룹
 - 이해관계자 범위 선정
- ✓ 주요 이해관계자 선정 결과
 - 임직원 / 공급망 / 이용자(아동, 지역민) / 산업안전 / 환경 등 (기관운영, 주요사업 공통 범위)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임직원 설문조사(인권 실태)
- ✓ 부서별 담당 인터뷰
- ✓ 감정 노동자 설문조사
- ✓ 주요 사업 파트너 설문조사
- ✓ 이용자 민원·의견 조사
- ✓ 미디어 조사(기관, 사업 관련)
- ✓ 외부 지적사항, 유관기관 자료
- ✓ 사회이슈(공공부문 주요이슈 등)

4 주요이슈 도출

- ✓ 인권경영 체계 강화
 - 법정 의무 외 적절한 교육 운영
 - 신고채널 안내내용 보완
- ✓ 업무상 공상에 대한 지원 강화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기반조성
- ✓ 환경부문 관리 데이터 공개
- ✓ 교육운영 시 안전 점검 운용
- ✓ 교육 참가자 보호 서약 운용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인권영향평가 주요 과정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 종류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재단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대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재단의 사업운영 및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위험요소 개선 수행

✓ 인권영향평가 기준

- (평가방법) 각 부문별 인권 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교육 후 서면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기준) 각 지표 별 추진실적 및 준비정도가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법규준수, 내규·매뉴얼, 시스템·활동 등)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점수도출) 지표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하여 전체점수 도출

구분	1	2	3	4	5	6	7	8	9
평점	100~ 90점	89~ 80점	79~ 70점	69~ 60점	59~ 50점	49~ 40점	39~ 30점	29~ 20점	20점 미만

- (산출방식) 점수제 or 등급제 or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SA) 등 평가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 존재
- 점수보다는 리스크를 발굴하여 개선해 가는 노력이 중요(점수 자체로 기관 간/ 부서 간 비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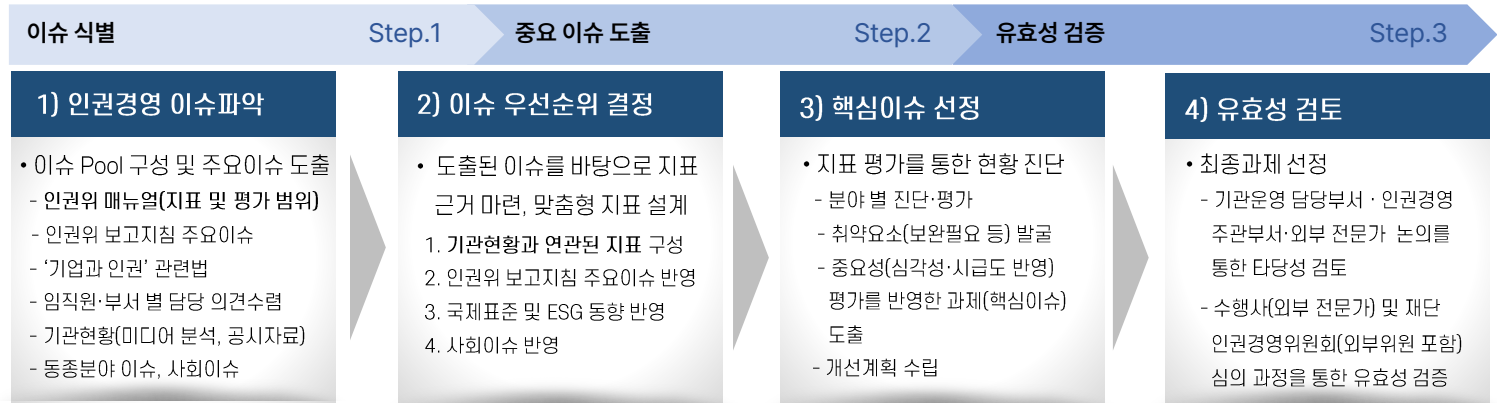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인권영향평가 주요 과정

인권영향평가 개요

- ❖ 국가인권위 매뉴얼 및 신규지침 · 기관현황 · 주요사업 현황 · 사회이슈 등을 종합 반영한 진단지표 마련
 - ❖ 중대성 평가* 과정을 통한 핵심이슈(최종과제) 선정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유효성 검증 진행
- * 국가인권위 중대성 평가 권고 : 이해관계자의 인권영향평가 참여(의견수렴 및 이슈도출 등) 및 최종과제 도출과정 공개

✓ 평가과정



▶ 인권영향평가 이슈 Pool 및 주요이슈

구분	이해관계자 범위	주요이슈
인권위 매뉴얼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인권경영체계/고용상비차별/결사 및 단체/산업안전/공급망/환경 등
인권위 보고지침 이슈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교육강화(법정의무 외 추가·다양한 방법), 인권경영 보고체계 등
기업과 인권 관련법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법, 산재보험법 등
기관현황 / 사회이슈	임직원/자회사/지역사회/고객/환경	기관 공시자료(홈페이지 등) / 근로권 보장 -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사회이슈)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인권영향평가 주요 과정

주요이슈 융합 및 진단범위 설정(공통)

- ❖ 중대성 평가 과정을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융합
- ❖ 관련부서 · 외부 전문가 논의 과정을 통한 핵심이슈 선정(심각성 · 시급성 반영)



지표 범위 설계 및 이슈 선정

체크리스트(지표) 제작 · 진단 · 핵심이슈 도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기반
인권경영 범위 설정(10개 분야)
인권경영 교육 실시(보고지침 반영)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유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범위 내
사업 체계 및 성과관리
효율적 사업운영 및 안전관리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금차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소개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2)

- ❖ 총 10개 분야 - 33개 항목 - 142개 세부 평가지표 마련
- ❖ 지표특징 : 인권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 현황에 맞게 일부 내용 수정 운영

신규 수정 삭제

구분	분야	평가항목	변동내역(인권위 매뉴얼 대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체제구축(6)	인권존중 정책 선언(6)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5)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6)	인권위 보고지침 반영(리스크 진단체계 강화)
		인권경영 성과(7)	
		구제절차 마련(7)	
		인권교육 실시(2)	인권위 보고지침 반영(추가)
	고용상 비차별(4)	고용상 비차별(5)	
		고용상 남녀 비차별(6)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3)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5)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무관 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강제노동의 금지(2)	강제노동 금지(8)	사회이슈 추가 : 연결 차단권
		사업파트너의 강제노동 예방(2)	
	아동 노동의 금지(2)	연소자 고용금지(3)	일부 무관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7)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금차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소개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2-2)

- ❖ 총 10개 분야 - 33개 항목 - 142개 세부 평가지표 마련
- ❖ 지표특징: 인권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 현황에 맞게 통·폐합 / 신규지표 추가

신규 수정 삭제

구분	분야	평가항목	변동내역(인권위 매뉴얼 대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산업안전 보장(4)	작업장 안전(5)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4)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5)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3)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3)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4)	
		모니터링 실시(2)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4)	
	현지주민의 인권보호(2)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2)	일부 무관 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3)	
	환경권 보호(4)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5)	
		환경정보의 공개(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5)	
		비상계획 수립(5)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4)	근무환경 개선(4)	근무여건 개선, 양성평등 노력 관련 내용 추가(신규)
		고객인권 보호(4)	대외 소통채널, 피해보상 등 추가(신규)
		사업 파트너 인권보호(4)	강사, 문화 예술인 인권 보호 추가(신규)
		정보보안(2)	개인정보보호, 공공기록물 관리 추가(신규)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금차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소개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 지표구성 : 총 2개 분야 - 6개 항목 - 15개 세부 평가지표 마련
- ❖ 지표특징 : 인권경영 범위 내 '원활한 사업 운영관리'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지표 선정

01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관리』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사업운영, 안전관리

02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 직원 인권보호, 사업 참가자·파트너 인권보호,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분야	평가항목
	문화예술교육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관리(8개)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2), 사업운영(4), 안전관리(2)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7개)	직원 인권보호(2), 사업 참가자·파트너 인권보호(3),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2)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진단결과(2024)

❖ 분야별 진단을 통한 취약요소 발굴 - 취약요소 포함 인권경영 전체 범위 내에서 이슈 도출

10개 분야 33개 항목, 총 142개 지표		담당부서	전체지표 수	유효지표 수	진단결과	
					점수	점수(백점환산)
1	인권경영 체계 구축(33개)	기획조정팀	33	33	64	96.97
2	고용상의 비차별(16개)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16	16	32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2개)	기획조정팀	12	12	24	100
4	강제노동의 금지(8개)	경영지원팀, 기획조정팀	8	8	16	100
5	아동노동의 금지(10개)	기획조정팀	10	10	20	100
6	산업안전 보장(17개)	시설관리팀, 경영지원팀	17	16	31	96.88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10개)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10	10	15	75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5개)	기획조정팀	5	5	10	100
9	환경권 보장(18개)	시설관리팀	18	18	34	94.44
10	이해관계자 인권보호(13개)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13	13	25	96.15
합계(평균)			142	141	271	95.94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인권영향평가 결과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진단결과(2024)

❖ 분야별 진단을 통한 취약요소 발굴 - 취약요소 포함 인권경영 전체 범위 내에서 이슈 도출

2개 분야		6개 항목, 총 15개 세부지표	담당부서	유효지표 수 (= 전체 수)	진단결과	
					점수	점수(백점환산)
1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관리 (8개)	1)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2개)	예술교육팀	2	4	100
2		2) 사업운영(4개)	예술교육팀	4	8	100
3		3) 안전관리(2개)	예술교육팀	2	3	75
4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 (7개)	1) 직원 인권보호(2개)	기획조정팀 예술교육팀	2	4	100
5		2) 사업 참가자·파트너 인권 보호(3개)	예술교육팀	3	4	66.67
6		3) 사업 만족도 제고 노력(2개)	예술교육팀	2	4	100
합계(평균)				15	27	90.28

3.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주요 인권이슈 및 개선계획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기관운영)

도출된 이슈에 대한 중요성(심각성·시급도 고려) 평가 과정(각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논의)을 거쳐 핵심이슈(최종과제) 선정

【핵심이슈 선정 범위】 인권영향평가 진단 결과 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이슈 및 대내외 인권경영 동향 등 종합 반영

202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

No	분야	대상	담당부서	핵심이슈(최종과제)	이슈배경	개선계획	중대성 평가		담당부서 타당성 검토 결과
							심각성	시급성	
1	인권경영 체계	대내외 이해 관계자	기획조정팀	인권침해 신고센터 내용 보완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정보보완 필요	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내용 보완 - 기관 공식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신고센터 상 안내 내용 보완 -> 인권 및 인권침해 소개, 신고대상 안내	중	상	수용
2	산업안전	임직원	경영지원팀	업무상 공상자에 대한 지원	산재보험이 미적용되는 건에 대한 복지차원 지원 여부 점검 및 상해보험 등 유지 필요	업무상 공상자에 대한 지원 - 단체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상	수용
3	공급망 관리	대외 이해 관계자	경영지원팀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제도 운영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관련 대내외 동향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계약 시) '서약 제도' 운영 - 계약 시, 계약 상대방(사업 파트너)의 노동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준수 요구를 위한 공급망 관리 차원의 서약서 요청(징구)	중	상	수용
4	환경권 보장	대내외 이해 관계자	시설관리팀	환경부문 관리 정보 공개	기후변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환경보호 노력 일환 ESG경영 등 환경부문과 관련한 성과지표 및 데이터 등 정보공개 강화 필요	환경부문 관리지표 및 세부 데이터 공개 -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리지표 및 실적 공개 (공식 홈페이지 ESG페이지 내 공개)	중	상	수용

3.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주요 인권이슈 및 개선계획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주요사업)

도출된 이슈에 대한 중요성(심각성·시급도 고려) 평가 과정(각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논의)을 거쳐 핵심이슈(최종과제) 선정

【핵심이슈 선정 범위】 인권영향평가 진단 결과 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이슈 및 대내외 인권경영 동향 등 종합 반영

2024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권영향평가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

No	분야	대상	담당부서	핵심이슈(최종과제)	이슈배경	개선계획	중대성 평가		담당부서 타당성 검토 결과
							심각성	시급성	
1	고객인권	이용객	사업부서	이용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운용	교육재료 등이 참가자에 위해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교육운영 시, 시설(공간 포함) 및 교육재료 등이 참가자(아동·청소년 등)에 위해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및 운용	상	상	수용
2	공급망 관리	사업 파트너	사업부서	사업 파트너에 대한 '교육 참가자 인권보호' 이행 요청	아동 등 참가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참가자 인권 보호 준수 서약 필요	참가자(아동·장애인 등) 특성을 고려한 강사 등 외부 전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인권보호 서약제도 운용	중	상	수용
3	공급망 관리	사업 파트너	사업부서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인권경영 문화확산	사업 관련 주요 협력사, 예술인 등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홍보 및 인권침해 신고채널 안내 등 필요	주요 사업 파트너(협력사, 예술인 등)에 대한 인권경영 홍보 추진 - 인권·ESG경영 홍보 및 기관 신고제도 안내 포함	중	상	수용

3.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계획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특별히 도출된 이슈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분야	대상	핵심이슈	현황 및 개선계획
아동·장애인 등 인권	강사	교육 참가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파트너 서약제도 운영	✓ 현황[담당 : 예술교육팀] » 교육 참가자 인권보호를 위해 강사 등의 교육 내용 점검 및 업무 회의 운영
			➢ 강사 등 사업 파트너에 대해 아동 등 '교육 참가자 인권보호' 이행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참가자(아동·장애인 등) 특성을 고려한 강사 등 외부 전문가에 대한 교육 참가자 인권보호 서약제도 운용
공급망 관리	사업 파트너	신고·구제 정보의 대외 안내 강화	✓ 현황[담당 : 기획조정팀] » 재단 인권침해 신고채널 및 구제제도 대외 홍보 - 일부 사업 대상 사업파트너 의견수렴 및 재단 인권경영 신고·구제 안내
			➢ 개선계획 » 재단 인권침해 신고·구제절차 대외 홍보 강화 - 향후 인권영향평가 시, 의견수렴 대상 사업 파트너 확대 및 재단 인권경영 신고채널·구제절차 안내 강화 » 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내용 보완 - 재단 공식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 신고센터 상 '신고대상' 등 안내 내용 보완

III. 구제절차

- | | |
|--------------|----|
| 1. 구제절차 소개 | 25 |
| 2. 구제절차 운영성과 | 27 |

1. 구제절차 소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구제절차 소개

구제절차 운영성과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진정 제기절차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침해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운용(신고안내 · 신고대상 · 신고자 신분보장 · 처리절차 · 담당부서 등 명시)

인권침해 신고센터 (접수 : 온라인 or 방문)	✓ 갑질, 차별 행위, 성비위, 기타 인권침해 ✓ 신고접수 직접 운영
사건 접수	✓ 기획조정팀 진정 접수 ✓ 신고자 신분보장, 비밀유지
정보 확인 및 안건 상정	✓ 사실관계 확인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인권경영위원회 조사·결정	✓ 인권침해 여부 조사 및 사건 심의 ✓ 인권경영위원 의결 · 진정 각하
결정서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서명 날인 ✓ 진정인에 결과 통보(신고자 결과확인)
권고 이행	✓ 이사장에게 시정 · 조치 · 신고 권고 ✓ 권고조치 이행

■ ■ ■ 목적

문화예술진흥과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 ■ ■ 내용

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기관·시민·예술인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신고 가능

■ ■ ■ 대상

- 갑질 · 차별행위
- 성희롱 등 인권침해

■ ■ ■ 방법

- 전화 : 032-500-2002
- 이메일 : cultmv@bpcf.or.kr
- 인터넷 : 인권침해 신고센터(<https://www.bpcf.or.kr>)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1. 구제절차 소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구제절차 소개

구제절차 운영성과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구제절차의 효과성 제고 및 진정한 보호 제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사건 처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전문성 강화

 **System 1**
구제기준 마련

 **System 2**
구제제도 홍보

 **System 3**
구제 독립성 강화

01

02

03

구제기준 강화 및 심의 독립성 확보

System 1. 구제기준 강화

- ✓ 인권경영 운영지침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 ✓ 구제절차 강화를 위한 구제세칙 및 구제절차 매뉴얼 마련

System 2.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제제도 홍보

- ✓ 공식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센터 마련·구제정보 안내
- ✓ 사업 파트너 대상 인권침해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홍보

System 3. 심의·의결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

- ✓ 인권경영위원회 - 분야별 외부위원 4명 참여
- ✓ 인권침해 관련 사안 처리·심의의 독립적 역할 수행

2. 구제절차 운영성과 구제절차 운영성과

운영현황

- 대외 구제 진정 건수 : 없음('24년 기준)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인권침해 예방활동

- 인권경영 체계강화(인권경영 선언문 및 운영지침 등 기준 정기 점검, 부서별 인권 담당 지정을 통한 관리 체계 운용)
- 잠재적 리스크 관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시행, 리스크 발굴 · 개선 이행
-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원 지정 및 관련 제도 운영
-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절차 안내를 위한 인권침해 신고채널(홈페이지 내) 운영
- 인권경영 정책 권고 및 구제 관련 심의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다수 참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

- 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 정보 공개 강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신고채널 및 구제기준 정기 점검 및 보완 활동 시행

구제제도 개선노력

- 인권침해 신고채널 정보 공개 강화
 - 인권 및 인권침해 관련 소개 강화, 신고대상 안내 내용 보완 실시('25)
- 인권침해 대응체계 관련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구제제도 개선 점검('24)
- 구제기준(인권경영 운영지침·구제세칙·구제절차 매뉴얼) 정기 점검을 통한 구제제도 개선 노력('24)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구제절차 소개

구제절차 운영성과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IV. 인권경영 교육

1. 인권경영 교육 체계·성과 29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인권경영 교육 체계·성과

종합평가·공개·소통

규정 및 전담부서

- 인권경영 운영지침(제20조 인권교육) 마련
- 전담부서 지정 - 기획조정팀
- 임직원 대상 연1회 이상(법정의무 외) 인권교육 실시, 다양한 주제로 사이버·집합교육 등 방법 활용

교육실적(법정의무 외)

인권경영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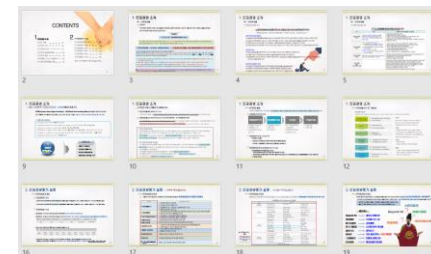
- 대상 부서별 인권담당
- 일자 2024. 11.1. 10:00~11:30
- 내용 외부 전문가의 인권경영 이해 관련 교육 실시
- 방법 대면(집합)
- 참석 참여율 : 100%(참여/대상)



교육내용



- 인권경영 소개
- 인권경영의 범위
- ESG와의 연관성
- 인권경영 보고전략
- 인권침해 사례
- 국내외 선도 사례 등



V. 종합적 평가 · 공개 및 소통

1. 인권경영 종합진단	31
2. 인권경영 성과평가	33
3. 인권경영 보고방식	35

평가지표 제작

“인권경영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 및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인권경영 종합 진단체계 마련(인권영향평가 외 별도 진단)
- 인권경영 국제표준 및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지침 주요이슈 등 반영

분야	진단분야(인권경영 주요이슈)	진단내용	근거
체계 강화	·인권경영 추진의지 (인권경영 리더십)	·인권경영헌장(선언문) 및 규정 마련 여부 - 선언문 최고경영자 명의 표명 - 규정 내 인권경영 책임자 명시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전략 마련 여부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운영 관리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경영 관리범위)	·인권경영헌장 상 <인권위 제시 내용> 포함 여부 - 국내외 규범 지지 여부, 비차별, 노동권 보장, 환경권 보장, 강제노동 / 아동노동 금지, 개인정보보호, 구제조치 제공 등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실행 전략	·실행력 제고 (인센티브 및 제재)	·인권경영 성과 및 참여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부 ·인권분야 관련 징계규정(징계 양정기준) 마련 여부	인권경영 국제표준 주요이슈
성과 관리	·인권영향평가 ·구제제도 ·과제 개선도 ·교육 이수율	·인권영향평가 실시여부 (매년 / 외부 유효성 검증 포함) ·구제기준 마련 여부 및 개선 활동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과제 개선 여부 ·인권경영 교육 이수율 (법정업무 교육 외)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정보 공시	·구제제도 성과 ·정보공개 투명성	·구제제도 운영성과(처리결과, 대표 사례 등) 공개 ·인권경영 정보공개 수준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진단결과 및 개선계획

인권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인권경영 종합 진단을 통한 이슈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분야	진단분야	진단현황	개선 혹은 지속 (유지) 계획
체계 강화	•인권경영 추진의지 (인권경영 리더십)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정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전략 마련	✓ 국내외 표준 및 국내법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인권경영헌장(선언문) 정기 점검 지속 실시
운영 관리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경영 관리범위)	•인권헌장(선언문) 공개 - 인권경영 전용 페이지 내 공개 - 선언문 하단 '기관명의 표명' 필요	✓ 인권경영 선언문 - 기관 혹은 최고경영자 명의로 표명
실행 전략	•실행력 제고 (인센티브 및 제재)	•인권경영 참여도려 및 평가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마련	✓ 인권경영 정책 추진 시, 실질적 참여증대 효과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중장기 전략)
성과 관리	•인권영향평가 •구제제도 •과제 개선도 •교육 이수율	•인권영향평가 실시('24~)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외부 전문가 참여) - 금년 과제 내년까지 개선 완료 예정 •구제기준 마련(구제세칙, 구제절차 매뉴얼) •금년 관리자 포함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이수율(참여인원/ 대상인원) 관리	✓ 인권위 권고 및 클린아이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외부 전문가 유효성 평가 포함) ✓ 금년 인권영향평가 과제 개선 이행 후 결과 공개
정보 공시	•구제제도 성과 •정보공개 투명성	•구제제도 운영성과 일부 공개 •홈페이지 인권경영 정보 공개	✓ 최근 고충처리 등 신고 및 접수·처리결과 공개 (발생 시) ✓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센터 내용 보완 (인권·인권침해 소개 등)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종합진단

인권경영 성과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금년성과 및 평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점검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중대성 평가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 전략 이행



금년과정

- ❖ 인권경영체계 점검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 법정 외 교육 운영
- ❖ 신고·구제절차 점검
- ❖ 인권경영 종합진단

- 재단은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자 인권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였음
- 인권경영헌장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금년에도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정책 추진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포함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개선 활동 이행
- 대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채널을 점검하여, 구제 관련 안내사항을 보완할 계획
- 인권경영 국제표준 및 국가인권위 보고지침을 반영한 인권경영 종합 진단 체계 마련 및 이슈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종합평가

- ❖ 인권경영 내재화 노력
- ❖ 공급망 관리 기반 조성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 실사과정 지속
- ❖ 대외 인권 문화확산 노력

- 재단은 인권 문화 대외 확산을 위한 임직원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법정외 의무 외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정책에 대한 합리적 권고와 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심의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이런 인권경영 내재화 노력과 더불어 상호존중 문화의 대외 확산을 위해 사업 파트너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차원의 인권보호 서약제도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등 관련 기반을 조성하였음
- 향후에도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포함한 인권 리스크 실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인권침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며, 인권인식 제고 교육을 통해 상호존중 내재화에 앞장서며 인권경영의 취지인 '문화확산'에 일조할 계획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종합진단

인권경영 성과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평가 과정 소개 및 과제 개선 계획

- 국내외 인권경영 표준 반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체계 점검 및 리스크 진단을 통한 이슈 발굴, 문화확산 노력 등 전반적 평가
- 평가 운영 시기가 연말이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년 미완료 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월하여 개선 진행 계획

인권경영 표준 반영



인권경영 국제표준 및 국가인권위 보고지침 반영

국제표준 주요이슈 및 인권위
보고지침을 반영한 인권경영
기준·체계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중대성 평가 운영

비정규직 포함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 인권경영 의견수렴을 통한
리스크 평가 및 개선 이슈도출

문화확산 노력



대내외 인권 문화 확산 노력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인식제고
교육 실시 및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 침해 예방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반 조성 등 노력

시기적으로 금년 미완료된 최종과제에 대한 개선 이행

-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개선 이행 목표 (~'25년)
- ✓ 차년도 평가 시 직전년도 성과점검을 통한 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시행 계획



3. 인권경영 보고방식 인권경영 보고 및 검증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종합진단

인권경영 성과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인권경영 보고 공개

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2024년 부평구문화재단 인권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 내부망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공개



주요 공개 위치



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인권경영 – 게시판

(<https://www.bpcf.or.kr>)

인권경영 보고 검증

국가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2024년 재단 인권경영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 및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전문위원의 심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4명 포함) 등 검증과정을 거쳐 공개

내부검증

주관부서 및 각 관리부서

- 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른 보고서 구성안 마련 (인권정책/인권영향평가/구제절차/교육/종합평가)
- 보고서 기본안 작성(세부항목/요구자료/기관현황 등)
-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과정을 통한 보고서 초안 마련
- 주관부서 및 인권영향평가 대상 부서 등 내부검증 시행

외부검증

외부 전문가 검토

- 외부 전문가(한국인권경영연구소) 유효성 검증
-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외부위원 4명 포함)
: 인권단체 활동가, 노무사,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등
- 검증기준 : 인권위 보고지침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도 평가 (90% 이상 충족)
- 검증결과 : 일부 보완 필요(보고에 대한 대외 소통활동 강화)

외부 전문가 유효성 검토를 통한 보고 검증 강화

APPENDIX

1. UN이행지침 인권보고 프레임워크	37
2. 인권경영 보고 지침	38
3. 유효성 검증 의견	39



UN이행지침 인권보고 프레임워크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

구분	보고원칙	세부내용	보고현황
인권존중을 위한 거버넌스	A1. 인권정책	인권 존중 의지 대외 공개 여부	P. 4~7
	A2. 인권존중 내재화	인권 존중 의지 내재화를 위한 노력	P. 4~7, 29
중점 보고 분야	B1. 주요 인권 이슈 목록	사업활동과 연관된 주요 인권 이슈	P. 12, 14, 15, 21~23
	B2. 주요 인권 이슈 식별	주요 인권 이슈 선정방법	P. 12~23
	B3. 주요 인권 관리 지역	주요 인권 이슈 발생 지역 및 지역 선정 방법	P. 12
	B4. 잠재적 인권 이슈	주요 인권 이슈와 잠재적 인권 이슈	P. 12, 14, 15, 21~23
주요 인권 이슈 관리	C1. 주요 인권 이슈를 위한 세부 정책	주요 인권 이슈를 위한 세부 정책	P. 21~23
	C2.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인권 이슈 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P. 12
	C3. 영향평가	지속적인 주요 인권 이슈 식별	P. 9~23
	C4. 인권 이슈 대응	주요 인권 이슈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활동반영	P. 21~23
	C5. 성과평가	주요 인권 이슈 해결을 위한 활동의 효과성	P. 31~34
	C6. 사후지원	인권 관련 피해자를 위한 사후 지원 활동	P. 21~23, 35



인권경영 보고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구분	보고원칙	세부내용	보고현황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인권경영 정책 선언	A1.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규정, 책임자, 전담부서, 변동사항	P. 5~7
	A2. 인권정책선언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	P. 4
인권영향평가	B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실시계획, 추진절차, 평가팀 구성, 전년도 이슈	P. 9~14
	B2. 주요 인권이슈 보고	인권영향평가 주요과정, 체크리스트 소개	P. 15~20
	B3.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주요 인권 이슈 및 개선계획	P. 21~23
	B4.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 성과	전년도 이슈에 대한 사후관리	P. 11
구제절차	C1. 구제절차 소개	진정 제기 절차, 진정인 보호 제도	P. 25~26
	C2. 구제절차 운영성과	성과사례, 예방활동 등	P. 27
인권경영 교육	D1. 인권경영 교육체계	지속적인 주요 인권 이슈 식별	P. 29
	D2. 인권경영 교육 운영성과	규정, 전담부서, 전산 시스템, 교육 실적	P. 29
종합평가 공개 원칙 및 소통	E1.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인권경영 전체과정, 성과 종합평가, 과제도출	P. 31~34
	E2. 인권경영 보고방식	인권 경영 보고 및 검증	P. 35
	E3. 보고에 대한 소통 결과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통 활동	-

검증 범위 및 기준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른 보고원칙(하기 검증범위 내)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
- 보고서 수록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보고원칙의 세부내용 별 보고현황 유효성 검토

검증 방법

- 인권위 보고 원칙에 따른 세부내용 구성, 보고현황 확인
- 기관현황 조사를 통한 수록 데이터·정보 신뢰성 검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및 중대성 평가 과정 검토
- 부평구문화재단 인권경영 전담부서·보고 담당자 인터뷰

검증범위	검증의견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인권경영 정책 선언	인권경영규정 및 선언문 제정·공표, 대내외 인권경영 동향 및 기관현황을 반영한 정기적 인권경영정책의 검토 등이 보고원칙의 핵심입니다. 재단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표 하였으며, 인권경영 운영지침은 물론 구제절차 매뉴얼 등 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동향을 반영하여 기준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영향평가	재단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인권 리스크 평가의 핵심과정인 대내외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에 있어 각 부문에서 금년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선이행을 완료하고, 개선성과를 보고하는 절차 진행을 권고 드립니다.
구제절차	재단은 임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제도 외에도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홈페이지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이해하기 쉽게 절차도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구제절차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 세칙 및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 후 공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는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점검을 통해 개선 이슈 점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경영 교육	국제표준 및 인권위 보고지침에서는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법정외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의 경우 금년 법정외의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 의식 제고를 통한 인권 내재화를 위해 차년도에도 법정외의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교육 주제 선정 시, 인권경영의 이해 관련 뿐아니라,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제언 드립니다.
종합평가 공개 원칙 및 소통 (보고에 대한 대외 의견수렴)	재단은 현재 외부위원 4인이 포함된 인권경영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물론 인권정책 권고 및 인권경영 보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검증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성과물 및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ESG추진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성과 홍보 및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종합의견	보고현황에 대한 신뢰성 검토(정보 사실 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인권위 보고지침이 요구하는 구성항목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충실히 작성되었으며, 일부 필요 요소(보고에 대한 대외 의견수렴·소통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